
미국의 민간경비관련 불법행위 책임

Liability of Tort Related to Private Security in America

최선우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Sun-Woo Choi(cso123@hanmail.net)

요약

오늘날 미국의 민간경비산업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의 규모는 공경비인 경찰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민간경비는 치안서비스의 민영화 내지 공동생산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경비의 성장 이면에는 민간경비에 의한 민사 및 형사책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민간경비의 민사책임 가운데 불법행위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민사책임에 있어서 계약책임은 계약에 의하여 서로 채권·채무관계에 서는 자들 사이에서 특수하게 일어나는 문제인데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은 이러한 특별한 관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사법(私法)적 관계에서 일반시민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민간경비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의 유형 및 일정한 특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건 및 몇 가지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중심어 : | 민간경비 | 민사책임 | 불법행위 책임 |

Abstract

These days American private security industries has rapidly grown, and its scales(employment, expenditures) exceed the public police. American private security are based on the theories such as privatization, co-production, and build more developmental framework. But the behind of private security, its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re more issued. In this, among the civil liabilities focused on the tort liability. In civil liabilities, contract liability is specially raised by between contractors, on the other hand tort liability is raised in general without special relationship in civil law relations. In this study, I would observe the types, conditions, protest reasons and the cases in tort generated by private security officials.

■ keyword : | Private Security | Civil Liability | Tort Liability |

1. 서론

민간경비(private security)는 범죄 및 손실예방 등과 관련하여 수많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선진국으

로 갈수록 그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민간경비는 그 규모면에서 공공경찰의 그것을 훨씬 능가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는 일반적으로 그 신분이 사인(私人)

* 본 연구는 2007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071015-002

접수일자 : 2007년 10월 15일

심사완료일 : 2007년 11월 06일

교신저자 : 최선우, e-mail : cso123@hanmail.net

에 불과하지만 그 역할 면에서 공경비인 경찰 등과 유사한 면이 적지 않다[1].

그런데, 이처럼 민간경비의 규모가 이상과 같이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경비원들의 활동이 항상 적절하고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간경비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없지 않으며, 따라서 이로 인해 제기되는 소송문제는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다. 민간경비원들의 업무수행 관련 소송은 범죄와 각종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고객, 직원, 세입자, 그리고 일반시민들에 대해 제공되는 보호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게 된다.

민간경비의 업무수행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게 된 것은 민간경비의 부적절한 대응도 문제가 되겠지만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민간경비의 질적·양적 활동역역이 그만큼 확대되어 왔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오늘날 민간경비의 활동영역은 산업시설, 쇼핑센터, 편의시설, 숙박시설, 주거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사무실, 빌딩, 그리고 공공시설 등 수많은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각 영역에서 관련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민간경비에 대한 소송이 증가한 만큼 그에 대한 사법(司法)적 제재역시 증가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소송 및 사법적 제재의 증가요인과 관련하여 슈나볼크(Schnabolk)는 ㉠민간경비산업의 급속한 성장, ㉡공중의 기대수준의 증가, ㉢민간경비서비스의 질적 수준, ㉣새로운 (규제)관련법 등의 증가, ㉤책임보험의 이용 가능성 증가, ㉬법률적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개인의 증가 등을 들고 있다[2].

이러한 맥락에서 타이츠(Taïtz)는 ㉠민간경비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경비원의 뚜렷한 증가와 이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업무의 증가는 '민간경비원과 시민의 접촉의 빈도'를 증가시켰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과정에서 '부정적 또는 부적절하게 상호작용하게 되는 빈도' 역시 증가시켰다고 하였다. 그리고 ㉡민간경비원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일반시민보다 책임을 더 져야 한다는 사회인식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즉 일반시민과는 달

리 민간경비원들은 법과 규정을 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그에 따라서 보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3].

일반적으로 민간경비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책임은 크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구분된다. 또 민사책임은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으로 분류된다. 이 글에서는 이 가운데 민간경비와 관련된 불법행위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불법행위 책임의 이론적 논의

민간경비원은 '민간인'의 신분으로서, 그리고 '전문적 직업인'으로서 자신이 수행한 행동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되며, 이 책임문제는 크게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형법 등에서는 관련규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해 이른바 '범죄'로서 일정한 처벌을 가하게 된다. 반면 민사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등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해서 계약불이행 및 불법행위(tort)로서 이에 대한 일정한 권리(즉, 손해배상청구 등)를 주장하게 된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민사책임과 관련하여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래 계약책임은 계약에 의하여 서로 채권·채무관계에 서는 자들 사이에서 특수하게 일어나는 문제인데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은 이러한 특별한 관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사법(私法)적 관계에서 일반시민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4].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불법행위책임의 영역이 더 포괄적·일반적이며, 계약책임은 특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계약책임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시에 불법행위책임이 문제시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불이행도 채무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아래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불법행위 책임의 범위

미국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크게 ㉠고의(intentional

wrong)에 의한 책임, ㉠과실(negligent)에 의한 책임, 그리고 ㉡엄격(strict)한 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그 성립요건이 다르고, 각 경우에 적용되는 항변사유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의 종류가 달라진다. 물론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불법행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도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러한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5].

1.1 고의에 의한 책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말 그대로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면서 저지르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일부 유형의 불법행위에만 인정된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유형은 크게 인신에 관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와 물건에 관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이 외에 명예에 관한 불법행위와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불법행위의 일부 유형이 여기에 포함된다. 인신에 관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폭행, 폭행위협, 불법감금,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의 부과 등이 있다. 물건에 관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부동산 불법침해, 동산의 불법침해 등이 있다.

이러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각 행위의 유형별로 별도의 구성요건을 규정해 놓고 있다. 예컨대, 폭행이라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원고의 신체에 대해 유해하거나 공격적인 접촉을 야기하는 피고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원고의 신체에 유해하고 공격적인 접촉을 야기하려고 하는 피고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셋째, 이들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또 불법감금이라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원고를 폐쇄된 공간에 감금하는 원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원고를 폐쇄된 공간에 한정하려는 피고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셋째, 이들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원고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요건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였으면 피고는 이에 대한 항변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요건을 입증하는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어 원고가 주장하는 각 불법

행위에 요건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다룰 수 있다. 둘째, 원고가 충분히 입증했다라도 다음과 같은 항변사유를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여기에는 동의, 정당방위, 재산에 대한 방위, 토지에 대한 자구행위, 동산에 대한 자구행위, 체포특권, 긴급피난 등이 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지만 원고가 동의했다면, 특정한 예외적인 사유(강요, 기망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고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는 자기 신체에 대한 공격이 행해지거나 혹은 행해질 것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공격의 대상이 된 자는 잠재적인 위해를 막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방어수단으로서 물리력을 사용하게 되고, 이 경우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마찬가지로 재산에 대한 방위는 자기의 재산에 대해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방어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다.

체포특권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법원과 같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해 적절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에 따라 행한 감금은 합법적이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없이도 합법적으로 체포할 수 있다. 즉, 경찰이나 경찰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사인은 중범죄가 행해졌다는 것과 체포된 사람이 그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다. 경찰의 지시 없이도 사인은 중범죄가 실제로 행해졌다는 것과 체포된 사람이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체포할 수 있다. 경범죄의 경우에는 해당 경범죄가 평화의 파괴에 해당하고 체포하는 자가 현장에서 행해진 경우에만 체포할 수 있다. 중범죄의 경우와는 달리 경범죄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에는 경찰과 사인에게 위의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같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체포에 의한 불법감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항변사유가 된다. 한편, 긴급피난은 자연적인 현상이나 다른 힘에 의해 피해를 입을 위험으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외견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항변사유이다. 이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하고자 하는 위험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행한 피해보다 훨씬

중한 경우에 인정된다.

1.2 과실에 의한 책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는 합리적인 사람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와는 달리 보다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즉 특정한 유형을 정해 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만을 인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와는 달리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요건은 모든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공통이다. 다만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중에서 특별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요건의 의미가 다소 다른 경우가 있을 뿐이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요건과 그 설명방법에서 그 차이가 있는 이유는 정신적인 상태(mental state)가 양 불법행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서는 원고에게 해로운 결과를 야기하는 특정한 행위를 하려는 의도이거나 혹은 최소한 이러한 결과가 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상당히 확실하게 알고 있는 정신적인 상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신상태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으로 각 정신상태는 구체적인 행위의 유형과 관련해 문제가 된다.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의 의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와 관련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구체적인 행위의 요건에 따라 요건을 정하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이에 대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서는 피고가 해로운 결과를 야기할 것을 의도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신상태에 있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서는 피고의 정신상태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불합리한 위험을 야기한 피고의 행위이다. 따라서 특정한 행위를 의도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와는 달리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서는 일반적인 행위를 대상으로 이것이 각 경우에 요구되는 적절한 주의라는 기준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논하게 된다.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항변사유로는 원고의 과실에 불법행위의 발생에 기여한 기여

과실이 있다. 기여과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과실도 불법행위의 원인 중의 하나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원고의 과실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기여과실의 법리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항변사유가 되고 따라서 부당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현재 미국 상당수의 주에서는 기여과실의 법리대신 상대적 과실 또는 과실상계제도를 택하고 있다. 상대적 과실제도 하에서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방법이 아니라 원고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피고의 배상액수를 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과실을 고려한다. 끝으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이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항변사유로는 위험의 수락이 있다. 위험의 수락이 인정되면 피고의 배상책임은 면제된다. 위험의 수락은 위험의 사실을 원고가 알면서 자발적으로 그 위험을 수락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의 인식과 자발적 수락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 위험의 수락이라는 항변사유가 인정된다.

1.3 엄격한 책임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책임은 고의이던 과실이던 피고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책임을 묻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위험의 방지를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더라도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불법행위를 잘못 없는 책임(liability without fault) 또는 절대적인 책임(absolute liability)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엄격한 책임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부른다. 엄격한 책임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피고에게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즉 원고를 안전하게 해야 할 피고의 절대적인 의무의 존재, 이러한 의무의 위반, 의무의 위반과 실질적인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 손해의 발생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들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원고를 안전하게 해야 할 절대적인 의무이다. 안전하게 해야 할 절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유형은 엄격한 책임을 인정하는 정책적인 이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고의 잘못이 없으면 원

고가 발생한 피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인 과실책임의 원칙이다. 그런데 일부 유형의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는 막대한 것이어서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피고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엄격한 책임이다.

엄격한 책임의 법리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행위로 야생동물, 고도로 위험한 행위, 제조물책임이 있다. 엄격한 책임에 의한 불법행위가 적용되는 행위에는 다른 법리에 의한 불법행위도 인정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엄격책임에 의한 불법행위라 할지라도 피고의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도 이론구성을 할 수 있다.

엄격한 책임에 의한 불법행위에 인정되는 항변사유도 존재한다. 피고가 고도로 위험한 행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했다라도 적절하게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인식의 실패 혹은 원고의 과실이 기여하였으면 원고의 기여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여과실은 엄격한 책임에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즉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은 엄격한 책임에서 항변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가 고도로 위험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합리하게 부주의한 행동을 하여 고도로 위험한 행위에 의해 사고가 나도록 기여한 과실은 엄격한 책임에 의한 불법행위에서 항변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위험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위험에 나아간 위험의 수락은 엄격한 책임에 의한 불법행위에서도 항변사유가 된다. 상대적 과실제도를 택하고 있는 미국 각 주의 대부분은 엄격한 책임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원고의 과실이 있으면 이것을 반영해 배상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2. 부차적 책임

부차적 책임(vicarious liability)이라는 것은 어떤 사

람이 불법행위를 했는데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부차적 책임을 지는 자는 불법행위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민사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에도 적용된다. 즉, 민간경비원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고용한 고용주 역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된다[6].

이와 같이 자기가 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부차적 책임의 특징이다. 자기가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예외적인 것이다. 따라서 부차적 책임은 불법행위를 한 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만이 진다. 부차적 책임을 지게 되는 특수한 관계로는 ㉠사용자와 피고용인과의 관계, ㉡공동사업 당사자 사이의 관계, ㉢자동차 주인과 운전수와의 관계 등이 있다. 이 가운데서 민간경비에 있어서 부차적 책임문제는 첫 번째 즉, 민간경비원을 고용한 사용자와 민간경비원과의 관계와 같은 사용자 책임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7].

사용자 책임은 피고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제3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가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로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인 이유로 인정되는 배상책임으로 사용자는 피고용인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용인의 업무 중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도 고려되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피해자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고용주는 배상한 액수에 대해 실제로 잘못을 한 피고용자에게 전액 변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2.1 사용자 책임 요건

일반적으로 고용자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고용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의 업무를 통제해야 한다는 점, 둘째, 불법행위가 자기를 위해 일하는(즉, 고용

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요구된다.

피고용인이 고용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용인이 고용자의 작업단의 일원이라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단순히 고용자가 피고용인의 작업을 하는 일반적인 방법만을 정하는 것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상세한 부분까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업무를 통제하여 피고용인인가의 여부에는 계약서의 제목이 도급이나 고용이나의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수행하는 작업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하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용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고용자의 사업적 목적을 수행하는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피고용인이 업무목적과 개인적 목적 두 가지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고용인이 업무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느냐의 여부에 따라 고용주의 배상책임 여부가 결정된다. 업무목적의 범위에서 시간적·지리적으로 조금 벗어났으면 고용주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면에 업무목적의 범위에서 시간적·지리적으로 현저하게 벗어났으면 업무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용주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편, 고용주의 통제를 받고 업무의 범위 내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피고용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용주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은 피고용인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만 적용된다. 그 이유는 피고용인이 고의적으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업무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고용주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주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라고 피고용인을 고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이유로 제시된다.

2.2 사용자 책임의 확대

그런데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도 고용주가 부차적인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된 전형적인 경우가 민간경비원 같이 강제적 물리력의 사용이 고용주에 의해 허가된 경우이다. 고용자에 의해 고용된 민간경비원은 이들이 수행하는 관련 업무(출입통제, 범죄 및 위험대응 등)의 성격상 필요에 따라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 묵시적으로 용인되었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고의적으로 사용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고용주도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III. 민간경비관련 불법행위 사건 및 판례

미국의 경우 민간경비에 대해 제기되는 민사소송의 대부분은 폭행, 폭행위협, 불법감금, 명예훼손,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부과, 사생활 침해, 그리고 과실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하나의 사건 및 몇 가지 판결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불법행위 관련 사건의 배경과 쟁점

1.1 사건의 배경

1996년 11월 마지막 일요일에 미드 애틀란틱(Mid-Atlantic) 민간경비회사 소속된 경비책임자 스틸레스(J. Stiles)와 경비원 던컨(D. Duncan)은 경비계약 체결에 의해 글래스(Glass)오피스텔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경비계약 상의 이들의 일차적 근무목적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출입을 체크하는 일이었다. 참고적으로 이들 두 경비원들은 이 근무지에서 오랜 동안 근무해왔고, 관련민간경비 분야에서도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사건의 발생한 그날(일요일) 오후 약 5시 경에 그램블링(E. Grambling)이라는 한 여성변호사가 오피스텔 내의 자신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 들어왔다. 그런데 그녀가 출입하는 시간에 출입을 기록하는 업무를 맡은 이들 2명의 경비원은 자리를 비우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그녀는 비록 출입을 체크하는 데스크 위에 출입기록부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그 시간에는 근무를 서는 경비원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따

라서 그녀는 아무런 출입기록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로 올라갔다.

그런데, 오후 약 7시경에 두 명의 경찰이 오피스텔에 찾아와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들 경비원들에게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즉, 이들 경비원이 근무하는 해당 오피스텔 내의 918호실에서 한 여성이 불법침입자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아울러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강탈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라고 하였다. 출동한 2명의 경찰과 경비책임자인 스틸레스는 오피스텔 918호에 도착하여 극도로 불안과 공포감에 떨고 있는 그램블링을 발견하였다. 약간의 진정이 되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도중에 한 남성이 들어와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고, 상당량의 현금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 범죄자가 떠나기 전에 주먹으로 다시 그녀의 얼굴을 가격하였다고 하였다. 그녀는 비록 폭행을 당해 정신이 혼미하였지만 가까스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시간에 오피스텔 출입구에서 경비원이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경비원들에게는 연락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1.2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의 제기

이 사건을 계기로 그램블링은 오피스텔의 관리 및 미드 애틀란틱 경비회사 소속의 경비원을 고용하여 경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프론토(Pronto)사와 동 경비회사를 상대로 과실(negligent)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그녀는 당시에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들은 자신들의 근무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오피스텔 건물 내부에 대한 순찰활동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경비원들은 그녀가 그 건물 내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그녀는 과실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으로 1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고, 징벌적 손해배상금(punitive damages)으로 아울러 10만달러를

청구하였다.

1.3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 쟁점

먼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경비원들은 피해자인 원고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때 보호해야할 책임까지 지고 있는가가 문제시된다. 다음으로 원고인 그램블링은 비록 출입데스크에 경비원이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정확하게는 자리를 비우고 있었던 상황) 그녀가 건물에 출입할 때에 출입기록부에 기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위험을 야기시켰다고 볼 수 있는가하는 부분이다. 즉 원고 역시 일정부분 기여과실을 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과실에 의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오피스텔 측과 경비회사 측이 저야 할 책임이 각각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9].

2. 불법행위 관련 판례

2.1 볼링장 주차장 내의 폭행 사건

테일러(Taylor)라는 여성이 볼링장 주차장에서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날 초저녁에 그녀는 볼링장 내에 있는 카테일 바에 있었는데, 한 남자가 접근해서 귀찮게 하였다. 이에 그녀는 볼링장 내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을 괴롭힌 남자를 밖으로 쫓아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그녀는 계속 볼링장 내에 있었는데, 문 닫을 시간이 될 때쯤 시설 내의 경비원은 몇 시간 전에 그녀를 귀찮게 했던 남자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차에 가지 말라고 주의·경고를 해주었다. 이후 그녀는 볼링장을 나와 주차장으로 갔는데,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시설 내에 존재하는 어떠한 위협에 대해 고객에게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주의·경고해주는 것은 하나의 의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위협성을 알려주는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10].

2.2 아파트 현관 내의 폭행 및 강도 사건

클라인(Kline)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서 폭행 및 강도를 당했다. 그녀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는 지난 수년 동안 수차례 범죄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범죄의 위험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임대한 건물소유자는 아파트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장소에 c경비시스템을 설치 및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건물소유자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11].

1.3 식당 주차장 내의 폭행 사건

피코(Picco)라는 사람이 식당 주차장에서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식당의 손님으로서 식사를 하러 왔다가, 조명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식당 뒤의 주차장에서 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야간에 일정한 지역에 대해 경비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범죄발생을 억제하는데 있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지식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전에도 그 지역(식당주차장)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에 관한 일체의 증거(즉, 위험성 입증)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에 대해 식당운영자는 그 장소에서 이전에 어떠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을 지라도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12].

1.4 식료품점 주차장 내의 강간 사건

식료품점 주차장에서 세 남자가 아타미안(Atamian)이라는 여성을 강간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번 강간사건에 앞서 이전에도 다섯 차례의 폭행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식료품점에서는 해당지역의 위험을 예방·통제하기 위해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시설소유자가 자신의 시설에서 이전에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경비원을 배치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 시설소유자는 고객들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경비조명의 설치 및 다른 예방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고 하였다[13].

1.5 아파트 현관 내의 폭행 사건

한 건물에 세 들어 사는 플로렌스(Florence)라는 여

성이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현관에서 폭행 및 강도를 당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건물소유자와 세입자의 관계는 그 지역이 안전할 것이라는 정당한 근거를 토대로 형성된 것(즉 세입자는 해당 아파트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거주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14].

1.6 호텔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한 호텔에서 메이어(Mayers)라는 사람이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오하이오 주법원은 호텔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피해를 당한 고객은 피고(호텔)가 그 범죄에 대해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하였다[15].

IV. 결론

민간경비에 의한 민사상의 불법행위는 국가에 의한 형벌권과는 달라서 개인의 법익침해로 인한 대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을 본래의 취지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순전한 사법(私法)상의 권리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민간경비에 의한 불법행위는 동시에 범죄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즉, 어떠한 불법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 대한 법률적인 반응으로서는 형사상의 형벌과 민사상의 손해배상 두 가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민간경비원이 근무과정에서 타인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폭력을 행사한 자는 그에 대한 범죄자로서 형사책임을 짐과 동시에 불법행위자로서 민사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이다[16].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민간경비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간경비의 제도적 영역과 현실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의 법적규제 등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경비의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몇 가지 판례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C. William, *Private Security Trends: 1970 to 2000 The Hallcrest Reports II*, Washington: Hallcrest System Inc., pp.118-120, 1990.

[2] C. Schnabolk, *Physical Security and Technology*, MA: Butterworth Publisher, Inc., 1983.; Hess, Kären M. and Wroblecki, Henry M., *Introduction to Private Security*, N.Y.: West Publishing Company, p.73, 1996.

[3] S. Taitz, *Getting a Job, Getting Ahead, and Staying Ahead in Security Management*, NY: Rusting Publications, p.126, 1990.

[4] 김병태,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광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7집, p.137, 1997.

[5] 서철원, *미국 불법행위법*, 서울: 법원사, 2005.; Hess, Kären M. and Wroblecki, Henry M., *Introduction to Private Security*, N.Y.: West Publishing Company, pp.74-79, 1996.

[6] Burstein, Harvey, *Introduction to Security*, New Jersey: Prentice Hall, p.109, 1994.

[7] 서철원, *미국 불법행위법*, 서울: 법원사, pp.245-250, 2005.

[8] Hess, M. Kären, and Wroblecki, Henry M., *Introduction to Private Security*, N.Y.: West Publishing Company, pp.79-82, 1996.

[9] Hess, M. Kärenand, Wroblecki, and M. Henry, *Introduction to Private Security*, N.Y.: West Publishing Company, p.90, 1996.

[10] Taylor v. Centennial Bowl, Inc, 1966.

[11] Kline v. 1500 Massachusetts Avenue Corp, 1970.

[12] Picco v. Ford’s Diner, Inc, 1971.

[13] Atamian v. Supermarkets General Corp, 1976.

[14] Trentacost, Florence v. Brussel, Dr. Nathan T.,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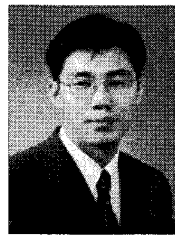
[15] Mayers v. Ramada Inn of Columbus, 1984.

[16] Burstein, Harvey, *Introduction to Security*, New Jersey: Prentice Hall, p.109, 1994.

저자 소개

최 선 우(Sun-Woo Choi)

정회원



- 1995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 행정학과(행정학사)
- 1997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 행정학과(법학석사)
- 2000년 8월 : 동국대학교 경찰 행정학과(법학박사)

▪ 2001년 3월 ~ 현재 :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교수

<관심분야> : 경찰사, 경찰법, 민간경비, 비교경찰